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98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8.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25

www.ig.ksyfs.co.kr
ksyfs5252@naver.com

용범양대창

정 보 공 개 서

[(주)홀리카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홀리카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공장동 1314호 (신동)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31-233-9206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31-233-9205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031-233-920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4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6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8

별첨1 [재무현황]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첨3 [주방설비 및 집기리스트]

별첨4 [필수식자재목]

별첨5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홀리카우	용범이네 인계동깍데기 외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신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2.08	2019.02.15	김승용	031-233-9206	031-233-9205
	법인등록번호	135811-0360213	사업자등록번호	732-86-0133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승용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외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신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승용	031-233-9206	031-233-92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정범석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외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신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승용	031-233-9206	031-233-92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주연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외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신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승용	031-233-9206	031-233-920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정연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외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신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승용	031-233-9206	031-233-920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용범양대창]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용범양대창	
상 호	용범양대창 OO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 40-2020-0048405(43류) 등록번호 : 4017291190000(29류) 등록번호 : 4017291180000(35류)
그 밖의 영업표지	용범양대창	출원번호 : 40-2020-0048402(43류) 등록번호 : 4017291210000(29류) 등록번호 : 4017291200000(35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502,847	2,156,077	1,346,770	7,638,786	-1,692,176	-1,643,998
2022년	6,569,863	2,125,858	4,444,005	8,919,012	-2,990,329	-3,110,339
2023년	3,717,387	1,707,355	2,010,032	6,316,892	-2,416,036	-2,561,862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3년도 [용범이네 인계동겉데기],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가맹사업만 진행하였으며, 브랜드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위 1)의 매출 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승용	대표이사	2019.02.08~현재	(주)홀리카우 대표이사	업무총괄
	정범석	이사	2019.02.08~현재	(주)홀리카우 이사	경영지원
	박주연	이사	2019.02.08~현재	(주)홀리카우 이사	경영지원
	정 연	감사	2019.02.08~현재	(주)홀리카우 감사	업무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	1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용범양대창]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홀리카우	가맹사업 경영	2019.06.~ 현재	용 범 이 네 인 계 동 껌 데 기 (등 록 번 호 : 20190499)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브랜드 경영
			2019.11.25.~현재	용범이네 노상통닭(등록번호: 20191169)이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브랜드 경영
			2021.04.25.~현재	오늘의고기미트스토리 (등 록 번 호:20210999)라는 영업표지의 기타도소매 브랜드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록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활동	2021.05.18. 등록완료	등록번호 4017291190000(29류)	(주)홀리 카우	2031.05.18	
		2021.05.18. 등록완료	4017291180000(35류)		2031.05.18	
용범양대창		2021.05.18. 등록완료	등록번호 4017291210000(29류)		2031.05.18	
		2021.05.18. 등록완료	등록번호 4017291200000(35류)		2031.05.1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용범양대창] 가맹사업 현황

1. [용범양대창]을 시작한 날 : 2020.08.21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05.07

2. [용범양대창]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김승용 에프에스	용범양대창	김승용	2021.04.~2022.0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53, 4층(인계동)
(주)홀리카우	용범양대창	김승용	2022.06. ~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55, 공장동 1314호 (신동)

3. [용범양대창] 업종

영업표지	업종	
용범양대창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소고기,소부속고기 (대창,막창,곱창,특양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용범양대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5	1	-	-	-	-	-	-
서울	1	1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2	2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1	-	1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2	2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용범양대창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	-	-	7	-	5
2022	5	-	5	-	-	-
2023	-	-	-	-	-	-

6. 용범양대창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홀리 카우	용범이네 인계동겉데기	20190499	기타 외식	35/-	11/1	2/1
		용범이네 노상통닭	20191169	치킨	-	-	-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20210999	기타 도소매	-/9	1/6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사는 2023년말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용범양대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용범양대창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브랜드별 광고 및 판촉 비용의 구분이 어려워 “용범이네인계동겅데기, 용범이네노상통닭, 용범양대창, 오늘의고기 미트스토리” 전체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86,549	 (비공개)	-	-
광고	소계	 (비공개)	86,549	 (비공개)	-	
판촉	無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청담동지점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2 (화천빌딩 1층 하나은행)	02-579-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홀리카우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부가세 포함)

귀하가 용범양대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 본부	예치	계약종료시 반환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 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개점 전 교육비용은 2인 기준이며 매장컨디션에 따라 별도금액 없이 인원추가 허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			
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등 계약내용 위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19,3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5,000(부가세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7,323 30 평				* 기타 항목비용 불포함
인테리어 (점포 내부공사, 등)	협력업체	13,011	433.7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구조/상태에 따라 상이 66만원/(부가세포함)평 당 냉난방, 목공,도장,전기, 설비,도배, 금속공사 등
간판 내부설비	협력업체	26,015	867.1	제작착수 3일 전	제작착수 전 계약취소	메인간판, 네온싸인, 액자시트, 실사,바닥타일,철거, 금속공사, 유리, 페인트, 전기, 바닥철거 및

						마감, 어닝, 천막, 장비대 등
의탁자,기기, 식기	협력업체	3,625	120.8	설치 3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점포 구조/상태에 따라 상이/ 별첨참조
포스	협력업체	52	-	설치 3일 전	설치 전 계약취소	36개월 월할부가 (용지지원)
인쇄물/홍보 물	협력업체	220		제작착수전 7일	제작착수전 계약취소	메뉴판, 전단지, 명함 등
초도재료	협력업체	4,4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 별도공사 : 외부공사, 지방경비, 철거공사,소방방염, 전기중설, 냉난방, 도시가스, 화장실, 집진기, 집유기 등 기본공사

* 상기사항은 본사 및 매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감리비 11만원(평당)

* 본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공급방법과 공급업체 변경가능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용범양대창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본사는 가맹금 분납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9~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부가세포함한 카드+현금총 매출액의 4%	매월 5일, 20일/ 2회 분납	착오지급	후불제	* 세금계산서발행 * 정산기간 1회차 (매월 1일~15일 매출기준 / 당월 20일 인출) 2회차 (매월 16일~말일 매출기준 / 익월 5일 인출) *부가세별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협의	판촉미실시	판촉실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없음	-	-	-	보수교육, 재교육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9p.4) 참조)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범위에 따라 상이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본사협의			30페이지 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52	업체협의	-	-	할부가 36개월(용지지원)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상 금전채무지급기 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제3자 물류 공급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당사 031-233-9206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용범양대창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용범양대창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용범양대창의 비밀을 누설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용범양대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번호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 : 원)		거래처
		상한	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용범양대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단위:천원, VAT포함)	비고

2) 당사가 용범양대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책임	비고
대창겉데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계약해지	*본사 영업방침에 의해 메뉴변동 가능
대창구이			
막창구이			
곱창구이			
토시살구이			
LA갈비			
특양구이			
냄비곱창전골			
고기물냉면			
고기비빔냉면			
육회			
육회물냉면			
육회비빔냉면			
양마니깍두기볶음밥			
매운대창볶음			
뚝배기떡볶이			
또띠아추가			
스팸공기밥			
계란찜			
누룽지			
된장찌개			
떡,짜리고추 추가			
얼음맥주			
병맥주			

소주			
청하			
탄산음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타 가맹점주 및 제3자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대창껍데기 (150g)	9,900 (100g/6,60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가맹점 통지 등	*2020.06 기준
대창구이 (150g)	9,900 (100g/6,600)		
막창구이 (150g)	9,900 (100g/6,600)		
곱창구이 (150g)	14,900 (100g/9,933)		
토시살구이 (150g)	13,900 (100g/9,266)		
LA갈비 (200g)	14,900 (100g/7,450)		
특양구이 (130g)	17,900 (100g/13,769)		
냄비곱창전골	9,900 (볶음밥추가 2,000)		
고기물냉면	7,900		
고기비빔냉면	7,900		
육회	7,900		
육회물냉면	6,900		
육회비빔냉면	6,900		
양마니깍두기볶음밥	6,900		
매운대창볶음	11,900		
뚝배기떡볶이	3,900(치즈추가 1,000)		
또띠아추가	1,000		
스팸공기밥	1,000		
계란찜	3,000		
누룽지	2,900		
된장찌개	2,000		
떡,파리고추 추가	1,000		
얼음맥주	4,000		
병맥주	5,000		
소주	4,500		
청하	5,000		
탄산음료	2,000		

* 일부 품목은 가맹점영업환경차이로 인해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판매 가격은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용범양대창과 동일메뉴	용범양대창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상권으로 간주)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용범양대창'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용범양대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이커머스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용범양대창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 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용범양대창]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의 해지 사유]

1. 귀하가 계약서 제 2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3 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채무지급에 관하여 귀하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즉시 해지 사유]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1조 4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0조3항
○ 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계약내용은 계약기간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별도의 추가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담당팀 031-233-920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사업 영업 전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에 상속사실 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대한민국전역에서] 용범양대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용범양대창과 동일메뉴판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담당팀 031-233-920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용범양대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7:00~02:00	연 365일	문의: 담당팀 031-233-92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6명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가맹점 관리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필요에 따라)	본사 담당팀	
고객만족도 조사	담당자 고객만족도 조사 → 결과집계 및 확인 → 가맹점 통보 → 완료	수시(필요에 따라)	본사 담당팀	
품질 관리	담당자 고객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필요에 따라)	본사 담당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용범양대창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전체가맹점의 50%찬성)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일반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 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 품의 할인비용이 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 렛, 전단 등의 홍보 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참여 여부 결정 (전체가맹점의 70%찬성)→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70%미만 동의시 동의한 가맹점사업자 대상 진행 가능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전국광고의 경우 다른 성격의 광고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판촉의 내용 및 일시등과 관련하여 본사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 (주)홀리카우, 을: 가맹점사업자)

-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18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용범양대창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이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15조(로열티, 공급품 대금 등의 납입)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갑"또는"갑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 액
합계		47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걸쳐기 매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용범양대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조리 ,서비스, 점포운영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재교육	재교육필요항목		협의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당사 사전 고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요청사항	실습 및 이론	협의	선택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용범양대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7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재교육	7일	-	평가기준미달시
보수 교육	2일	-	신메뉴, 관리실무 등
특별 교육	협의	본사책정비용	가맹점주 요청

* 개점 전 교육비용은 2인 기준이며 매장컨디션에 따라 별도금액 없이 인원추가 허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또는

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계약 체결 후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필요로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전개 후라도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수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31-233-920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금예치신청서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홀리카우 (용범양대창)
	성명(대표자)	김 승 용
	주소(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공장동 1314호 (신동) (전화: 031-233-9206)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주방설비 및 집기 리스트]

* 설비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기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4 필수식자재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5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가맹본부용)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주)홀리카우	영업표지	용범양대창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부분	제공사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아래에 자필로 작성 ☞ "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 장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연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별첨)을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_____ (인) 가맹희망자: 성명_____ 서명 또는 (인)